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02 2021년 7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1년 5월 25일

다.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라. 상 정 일 :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5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다 사용과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에 따라 서울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적인 예방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 상담 분야와 중독 치료 등에 전문성이 요구됨
-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전문법인(단체)가 이미 연계하고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위탁 사무 내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17(화곡동)

○ 시설규모 : 274.17㎡(본관 2층, 별관 1층)

○ 주요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3년(2021.9.29. ~ 2024.9.28.)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51백만원('21년)

○ 산출근거 : 인건비 439백만원, 운영비 130백만원, 사업비 82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해 3년간(2021.9.29. ~ 2024.9.28.) 재위탁*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17(화곡동)
- 시설규모 : 274.17㎡(본관 2층, 별관 1층)
 - · 준공일자 : 1983.6.29.(2014.02.28. 리모델링 완료)
 - 개관일자 : 2013.10.30
- 주요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1.9.29. ~ 2024.9.28.)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소요예산 : 651백만원(2021년, 국비포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5. <u>"재계약"</u>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u>기존 수탁</u> 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탁대상 기관 현황

○ 서울시는 총 6개소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이하 '아이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이하 '본 센터')는 2013년부터(7년 11개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하 '본 수탁기관')에서 운영하였고, 총 11명(정규직 10명, 비정규직 1명)의 직원이 8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1개 분야, 5개 사업,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강서센터의 예산 현황 〉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21년	'20년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1년	'20년	증감액 (증감률)	
강 서	835,504	849,912	△14,408(△1.7)	강 서	835,504	849,912	△14,408(△1.7)	
사 업 수 입	37,760	31,472	6,288	인 건 비	444,670	429,431	15,239	
사업외수입	29,675	38,479	△8,804	물 건 비	45,903	44,774	1,129	
보 조 금	768,069	779,961	△11,892	경상이전	84,451	73,352	11,099	
- 시비보조금	651,000	643,018		자 본 지 출	2,860	17,054	△14,194	
- 민간대행사업보조금	-	4,000		사 업 비	229,280	253,731	△24,451	
-기타 보조금	117,069	132,943		사업외지출	20,000	20,000	_	
				예비비및기타	8,340	11,570	△3,230	

〈 강서센터의 시설 전경 〉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현황 〉

센	터 명	광 진	보라매	창 동	마 포 (구, 서대문)	강 북	강 서
개	소 일	'07.07.25	'09.04.21	'10.07.01	'10.07.01	'12.06.01	'13.11.01
소	재 지	광진구	동작구 보라마청소년센터 내	도봉구 창동청소년센터 내	마포구 마포청소년센터 내	강북구	강서구
면	적	234 m²	203.3 m²	285.17 m²	200.52 m²	212 m²	274.17 m²
운	영법인	사)흥사단	재)서울가톨릭 청소년회	학)삼육학원 삼육대학교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학)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위	한 만	'20.07.01~ '23.06.30	'19.07.01~ '21.06.30	'18.07.01~ '21.06.30	'20.07.01~ '23.06.30	'20.04.01~ '23.03.31	'18.07.01~ '21.06.30
정	원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걘	탈구역	광진구,강동구, 송파구,강남구	동작구,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은평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종로구	강북구,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본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관련 상담사업, 예방교육, 정책연구, 전담상담사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과년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사업실적이 감소하였음.

〈 2021년 강서센터의 사업현황 〉

인터넷중독상담사업

상담사업(11)

개인 및 가족상담, 상담사례관리, 부모코칭교실, 은둔형 청소년지원, 찾아가는 상담, 전화 및 SNS 상담, 사례개입 전문성 강화,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청소년 집단상담, 매체 치료상담, 심리검사 및 병원연계

예방교육사업(9)

유아동 예방교육「스마트지킴이 예방교육」, 청소년 예방교육, 부모 및 종사자 교육, 대안활동 「재능발굴탐험대」, 청소년 서포터즈 「청다담」, 비전트립 자유학기제, 원예활동프로그램 「달그락아지트」, 직무체험, 강사활동지원 「GS패밀리」

연구사업(3)

|자문위원회, 직원역량강화사업, 학부모운영위원회「별지기」

홍보사업(3)

Clean Click Campaign, 지역연계사업「함께 만드는 꿈」, 홍보사업「강서알리미」

기타사업(5)

예방해소사업, 전담상담사, 동행프로젝트, 학부모정보통신윤리교육, 보드게임으로 노는 세상

〈 최근 3년간 강서센터의 사업추진 성과 〉

(단위:명)(단위:천워)

연도별	계		일반		청소년	
	인원수	이용률	인원수	이용률	인원수	이용률
2018	124,057	100%	13,430	10.8%	110,627	89.2%
2019	131,120	100%	22,091	16.9%	109,029	83.1%
2020	44,641	100%	8,212	18.4%	36,429	81.6%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중독예방 및 예방교육 실적 〉

. (단위:천원)

구	ш	총	계	상담 실적 예방고		예방교	 육 실적
	분	횟수(건)	인원(명)	횟수(건)	· 인원(명)	횟수(건)	인원(명)
	계	40,740	295,883	31,316	94,911	9,424	200,972
광	진	4,401	47,493	3,354	11,915	1,047	35,578
보	라 매	14,392	54,749	10,589	20,505	3,803	34,244
창	동	7,563	49,083	6,112	14,796	1,451	34,287
마	포	4,035	55,681	3,131	20,994	904	34,687
강	북	4,927	44,236	3,875	13,178	1,052	31,058
강	서	5,422	44,641	4,255	13,523	1,167	31,118

다.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독예방 서비스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문성 또는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다만, 평생교육국이 민간위탁 추진절차 상 적정한 시기에 업무를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센터는 2013년(2013.3.7.)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었으며,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조례에 따라 본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 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본 센터는 2018년에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총신대학교에 재위탁되어, 금년 7월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기간을 갱신했어야 하나, 수탁기관의 내부 문제로 인해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미표시하여,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 심사 등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수탁기관(총신대학교)과 계약기간을 90일 여장하였음.
 - ※ **총신대학교의 재계약 의사 미표시 사유** :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임시운영 체제 (임시이사회)로,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재계약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강서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 〉

- 재계약 횟수 : 1회, 총 수탁기간 : 7년 11개월
 - 1차 2013.10.30. ~ 2016.06.30. : 2년 8개월, 신규위탁 공개모집
 - 2차 2016.07.01. ~ 2018.06.30. : 2년. 재계약
 - 3차 2018.07.01. ~ 2021.06.30. : 3년, 재위탁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 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본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지 또는 의사표시의 불능상태인지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민간위탁의 추진방식(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결정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하나.
-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시기에 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짧은 시일 내에 공모절차를 추진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끝내야 하는 졸속 행정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짐.

〈 현 수탁자 현황 〉

- 수 탁 자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재무구조
 - · 재 산 : 총 6,244,024천원
 - · 부 채 : 총 2,794,000천원
 - · 수 입 : 연 920,663천원 (2020.02.29. 기준, 재산, 부채 기준 동일)
- 재무건전성 : 재산규모가 부채규모를 초과하고,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임
- 위탁사업직원현황 : 총 11명(정규직 10명, 비정규직 1명), 시간제강사 : 총 26명
- 주요사업
 - · 교육사업 : 총신대학교 및 부속유치원. 광진교육복지센터, 성분도어린이집 운영
 - · 청소년사업 :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 가족지원사업 : 서초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여성권익 보호사업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 수익사업 : 상가 및 아파트 부동산 임대 사업

- 평생교육국이 민간위탁 추진방식(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 동의 요청도 지연되었으며, 본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을 시 본 센터의 운영은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어,
- 의회는 청소년상담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중단을 우려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사결정의 보류, 본 민간위탁의 적정성 평가 등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의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원활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관리방식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적정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으로 민간위탁기관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관리 능력에 대한 점검과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방식 변경
 - 재위탁 사유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적격자심사위원회 결과 70점 미만으로 재계 약 배제 (취득점수 : 69.5점)
 - 현 수탁기관(학교법인 삼육학원 삼육대학교)의 위탁기간은 2021.6.30. 만료예정이나, 신규 수탁자 공개모집을 위해 위탁기간 90일 연장.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402

제출년월일: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적인 예방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 상담 분야와 중독 치료 등에 전문성이 요구됨
 -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전문법인(단체)가 이미 연계하고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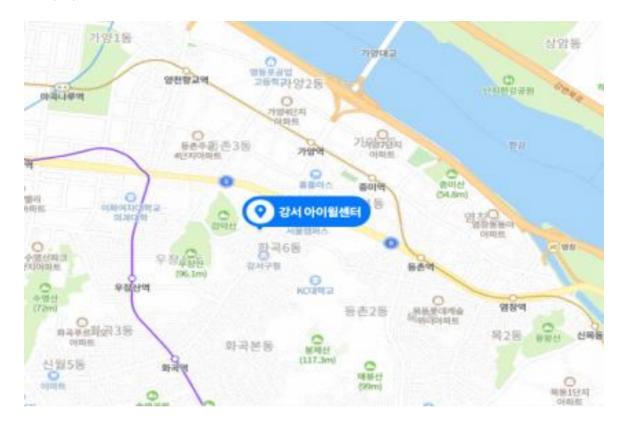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17(화곡동)

○ 시설규모 : 274.17 m²(본관 2층, 별관 1층)

○ 주요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1.9.29. ~ 2024.9.28.)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51백만원('21년)

○ 산출근거

- 인건비 439백만원, 운영비 130백만원, 사업비 8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이은정 (☎ 2133-4129)